

창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502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5028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단1048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인태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조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봉석

변론 종결 2021. 11. 11.

판결 선고 2022. 1. 20.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단1048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0. 2. 21. 접수 제17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0. 2. 21. 접수 제17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제15773호"를 "제15733호"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득관

판사서민아

판사석동우

별지